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여 수사권한 부여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4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 주요내용 .....      | 2 |
| 2. 개정안 검토 .....        | 4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5. 9.
3. 회 부 일 : 2025. 5.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2조제3호에 바목을 신설하여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3. -----<br>-----<br>-----<br>-----<br>-----     |
| 가. ~ 마. (생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 |
| <u>바. 사.</u> (생략)                                                                                                | <u>사. 아.</u>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

|                                                                                                                                                  |                                                                                        |
|--------------------------------------------------------------------------------------------------------------------------------------------------|----------------------------------------------------------------------------------------|
| <p><u>아.</u> 가목부터 <u>마목까지</u>의 죄<br/>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br/>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br/>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br/>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br/>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br/>3조 및 제4조의 죄</p> | <p><u>자.</u> -----<u>바목까지</u>의--<br/>-----<br/>-----<br/>-----<br/>-----<br/>-----</p> |
| <p>4. · 5. (생 략)</p>                                                                                                                             | <p>4. · 5. (현행과 같음)</p>                                                                |

## 2. 개정안 검토

### 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배경 및 연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정<sup>1)</sup>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공수처는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sup>2)</sup>되며, 공수처는 대상범죄와 관련한 예상 범죄발생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으로 설계되었음.<sup>3)</sup>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63호, 2020. 1. 14., 제정, 시행 2020. 7. 15.,

2)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략)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④ (생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략)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생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3) 이완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박영사(2020년), 71면

## 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

현행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포함<sup>4)</sup>하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을 말함.

|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의 “고위공직자” 범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li> <li>◦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li> <li>◦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li> <li>◦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국회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li> <li>◦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li> <li>◦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현역을 면한 후 포함)</li> <li>◦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li> <li>◦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등</li> </ul> |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실제 기소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인바, 이는 대상범죄의 발생건수가 실제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sup>5)</sup>

##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내란,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현재 검찰 및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도 수사권이 있어,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수사기관 간 관할권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외환 범죄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공수처는 현재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으로, 기존 부패범죄 수사만으로도 업무량이 상당한 상황인바,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수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인바 공수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이완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박영사(2020년), 70-71면

셋째,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까지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 정보수집 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 사찰기관화의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견<sup>6)</sup>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라. 관계기관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는 국가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써, 고위공직자가 관여할 경우 국가 위기와 법치주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3 |

---

6) 이완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박영사(2020년), 71면

## 참고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22. 5. 31. 기준)

### ○ 총괄('21. 1. 21. ~ '25. 5. 31.)

(단위: 건)

| 구 분                                   | 접 수    | 처 리   | 진 행 |
|---------------------------------------|--------|-------|-----|
|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21. 1. 21.~'22. 3. 13.) | 3,025  | 3,025 | -   |
|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22. 3. 14.~'25. 5. 31.) | 7,420  | 6,450 | 970 |
| 계                                     | 10,445 | 9,475 | 970 |

### ○ 사건접수 세부현황('21. 1. 21. ~ '25. 5. 31.)

#### -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3.) 이전

(단위: 건)

| 이첩요청 | 인지통보 | 이첩 | 고소·고발·진정 등 | 기 타 | 계     |
|------|------|----|------------|-----|-------|
| 1    | 226  | 92 | 2,704      | 2   | 3,025 |

#### -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4.) 이후

(단위: 건)

| 이첩요청 | 인지통보 | 이 첩 | 고소·고발·진정 등 | 기 타 | 계     |
|------|------|-----|------------|-----|-------|
| 13   | 436  | 193 | 6,688      | 94  | 7,424 |

### ○ 사건처리 세부현황

#### -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3.) 이전

(단위: 건)

| 직접 처리 |     |     | 다른 수사 기관 이첩 |     |    |       | 계     |
|-------|-----|-----|-------------|-----|----|-------|-------|
| 입 건   | 불입건 | 소계  | 검찰          | 경찰  | 기타 | 소계    |       |
| 24    | 381 | 405 | 2,162       | 452 | 6  | 2,620 | 3,025 |

#### - 사건사무규칙 개정('22. 3. 14.) 이후

(단위: 건)

| 직접처리     |            |          |            |            |         |       | 다른수사 기관 이첩 |     |    |     |    |       | 계 |
|----------|------------|----------|------------|------------|---------|-------|------------|-----|----|-----|----|-------|---|
| 공제       |            |          | 내사         | 진정         | 조사      | 소계    | 구분         | 공제  | 내사 | 진정  | 조사 | 소계    |   |
| 공소<br>제기 | 공소제기<br>요구 | 불기소<br>등 | 수사불<br>개시등 | 공람<br>종결 등 | 입건<br>등 |       |            |     |    |     |    |       |   |
| 13       | 11         | 1,352    | 391        | 3,606      | 8       | 5,381 | 0          | 370 | 0  | 696 | 3  | 1,069 |   |